

추가약정서(처분 및 전입의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개정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021.01.06,2022.08.01> 제 1 조 (목적) 이 약정서는 1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 4 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약정입니다. <생 략>	<2021.01.06, 2022.08.01,<u>2025.07.22</u>> 제 1 조(목적) 본 추가약정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구입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과 체결하는 추가약정입니다. <생 략>	- 처분조건 특약 대상 기존 규제지역 및 수도권 지역 추가 포함. -1주택 보유세대 구입자금 신규시 처분조건 및 전입조건 특약체결

현행	개정 (안)	비고
제 2 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 (중도금•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 년(이하 '정해진 기간')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제 2 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 건의 주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 제 4 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①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규제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조항을 적용합니다. <신설>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 (중도금•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규제지역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6 개월(이하 '정해진 기간')이내에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 구입자금 신규 불가 - 처분조건 특약 대상 기존 규제지역 및 수도권 지역 추가 포함. -처분기한 6개월로 변경

현행	개정 (안)	비고
<생략>	<생략> 제 5 조 (구입주택 전입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설>
제 5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생략>	제 6 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생략> 2. 제 5 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설>

현행	개정 (안)	비고
<생략> 제 6 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 생 략> 2.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생략> 제 7 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생략> 2. 제 5 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3. 제 2 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지 않거나, 제 3 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설> 전입조건 추가

■ 시행일 : 2025년 07월 22일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